

부산지방법원 2021. 6. 10 선고 2020가단346918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 고 A 유한회사

피 고 B

변 론 종 결 2021. 5. 27.

판 결 선 고 2021. 6. 10.

주 문

1.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1/6 지분에 관하여,
가. 피고와 C 사이에 2018. 10. 22.에 체결된 상속재산 협의분할약정을 취소하고,
나. 피고는 C에게 부산지방법원 등기와 2018. 11. 9. 접수 제50446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7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및 연제구청장, 동래세무서장, 법원행정처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 회신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C에 대하여 서울동부지방법원 2012차전33769호 양수금 지급명령신청 사건에서 “C는 원고에게 8,978,114원과 그 중 2,800,000원에 대하여 2012. 6. 1.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을 받아 위 지급명령이 2012. 5. 31. C에게 송달되었고, C가 이의신청을 하지 않아 2012. 6. 15. 확정되었다. 또한 원고는 C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가소1606449호 양수금 사건에서 2018. 5. 30. “C는 원고에게 1,466,656원과 이에 대하여 2008. 1. 24.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나. D(이하 ‘망인’이라 한다.)가 2018. 10. 22. 사망하여 C와 피고를 비롯한 6 자녀들이 상속인이 되었다. 피고는 망인의 소유였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18. 10. 22.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2018. 11. 9. 자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망인의 상속인들이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할 당시 C는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상속분 외에 별다른 적극재산이 없는 반면, 원고에 대하여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채무초과 상태였다.

2. 판 단

가. 사해행위의 성립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를 상속이 개시되어 공동상속인 사이에 잠정적 공유가 된 상속 재산에 대하여 그 전부 또는 일부를 각 상속인의 단독소유로 하거나 새로운 공유관계로 이행시킴으로써 상속재산의 귀속을 확정시키는 것으로 그 성질상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이므로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될 수 있고, 한편 채무자가 자기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거나 다른 사람에게 무상으로 이전하여 주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되는 것이므로,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를 하면서 자신의 상속분에 관한 권리를 포기함으로써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가 감소된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채권자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대법원 2007. 7. 26. 선고 2007다29119 판결 참조).

돌이켜 이 사건에서, 채무초과 상태인 C가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하면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자신의 상속분을 포기한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인 원고에 대하여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C는 그 당시 위 상속재산 분할협의로 채권자를 해할 것을 알았다고 볼 것이며, 나아가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되므로, C와 피고 사이에 2018. 10. 22. 체결된 상속재산 협의분할계약 중 C의 상속분인 6/11에 관한 부분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한다.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C가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거주하는 데 대한 임대차보증금 5,000,000원의 지급과 갈음하는 것으로 C의 상속분에 대한 대가를 모두 지급하였으므로 원고가 피대위할 채권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원고는 C와 피고의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사해행위로서 취소되고 원상회복 되어야 한다고 청구하는 것이지 C의 피고에 대한 채권에 대하여 C를 대위하여 청구하는 것이 아니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다음으로 피고는 이 사건 사해행위 당시 C의 채권자를 해하는 것을 알지 못하였다고 선의의 항변을 한다.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음이 인정되려면 객관적이고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 등이 뒷받침되어야 하고, 채무자의 일방적인 진술이나 제3자의 추측에 불과한 진술 등에만 기초하여 그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다고 선뜻 단정하여서는 아니된다(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3다206986 판결 참조). 피고와 C의 관계, C가 원고에 대하여 오래 전부터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다른 재산이 전혀 없었으며,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그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가 상속개시일로부터 불과 20일 사이에 이루어진 사정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고의 선의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의 선의 항변은 이유 없다.

다. 소결

C와 피고 사이에 2018. 10. 22.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체결된 상속재산 협의분할계약 중 C의 상속분인 6/11에 관한 부분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원상회복으로서 피고는 C에게 부산지방법원 등기과 2018. 11. 9. 접수 제50446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결 론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다.

판사 오규희

별 지 목 록

[토지]

부산 연제구 E 대 99㎡ 중 224/990 지분

[건물]

부산 연제구 E

조표F

시멘트 블록조 슬래브지붕

2층

연립주택

1층 76.63㎡

2층 76.63㎡

내 조표G

1층 H호

39.105㎡ 끝.